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관계 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정책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축소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범위를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며,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지원 조항을 삭제함.

그리고 다른 법률상 인·허가 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인·허가 의제 개정조문 위치를 변경하고, 실제 모든 준공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작성·승인할 필요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되어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승인하도록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산업입지정책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축소함(안 제4조).

나.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되어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승인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다. 향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인·허가 의제 개정조문
위치를 변경함(안 제11조).

라.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지원 조항을 삭제하
여 제18조 등을 현행대로 유지함(안 제18조 및 제27조).

마.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범위를 비수도
권으로 한정함(안 제27조의8 신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4조제4항 전단 중 “지정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지정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6항 중 “준공된”을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에 제1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0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19의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안 제18조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

안 제27조제17호 및 제18호의 “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법 제18조”로 한다.

안 제27조의8 중 “경제자유구역”을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로 하고, “시·도지사”를 “관할 시·도지사”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u> 」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회의 심의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

의견을 들어야 한다.	<u>따라 지정된 산업</u> <u>단지의 경우는 제</u> <u>외한다).</u> ----- ----- ----- ----- ----- -----	----- -----
⑤ ~ ⑨ (생략)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⑤ (생략) <u><신 설></u>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u>	⑤ ~ ⑨ (개정안과 같음)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u>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 ----- -----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 인·협의 및 신고 등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 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 는 공고가 있는 것 으로 본다. 1. ~ 19의2. (생 략) 1. ~ 39. (생 략) <u><신 설></u>	1. ~ 19의2. (현행 과 같음) <u><신 설></u> 20. ~ 39. (현행과 같음) 40. 「항만 재개발	1. ~ 19의2. (개정 안과 같음) 19의3. 「항만 재 개발 및 주변지 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0. ~ 39. (개정안 과 같음) <u><삭 제></u>
---	--	--

② ~ ⑤ (생략)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생략) <u><신 설></u> 제27조(지방자치단체	<u>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제27조(지방자치단체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u>현행과 같음</u>) <u><삭 제></u> 제27조(지방자치단체
---	--	---

136조, 제137조	-----	-----
및 제144조에 따	-----	-----
른 도시·군계획	-----	-----
시설부지의 매수	-----	-----
청구, 개발행위	-----	-----
의 허가, 도시·	-----	-----
군계획시설사업	-----	-----
의 시행, 단계별	-----	-----
집행계획의 수립	-----	-----
및 이행강제금	-----	-----
의 부과·징수,	-----	-----
토지에의 출입,	-----	-----
청문, 보고·검	-----	-----
사 및 과태료 부	-----	-----
과·징수 등에	-----	-----
관한 사무(도시	-----	-----
·군계획시설부	-----	-----
지의 매수청구,	-----	-----
단계별 집행계획	-----	-----
의 수립 및 도시	-----	-----
·군계획시설사	-----	-----
업의 시행에 관	-----	-----
한 사무는 이 법	-----	-----
제6조의 경제자	-----	-----
유구역개발계획	-----	-----
에 따른 개발사	-----	-----

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 ----- ----- ----- -----	----- ----- ----- -----
19. ~ 27. (생략)	19. ~ 27. (현행과 같음)	19. ~ 2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설>	<u>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u>	<u>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u>

		<u>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u>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74
----------	------

발의연월일 : 2024. 9. 23.

발 의 자 : 박성민 · 강민국 · 안상훈
박정하 · 최형두 · 서일준
김상욱 · 이현승 · 구자근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 2003년 인천에 처음 지정된 이후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등 현재 총 9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은 20여 년을 지속 성장하여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271.4km² 면적에 약 8천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23만여 명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거점이 되었으나, 새로운 신산업의 부상,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경제자유구역도 변화해야 하는 시점임.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내 타법에 따른 중복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4항, 제7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

- 1) 기 지정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 절차인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
- 2)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
- 3)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

나. 경제자유구역의 관리·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안 제9조제6항, 제27조의4, 제27조의8)

- 1)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기존 개발사업시행자가 부재한 경

우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2) 경제자유구역 내의 규제 혁신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신청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도 부여
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안
제9조의8제1항, 제18조제2항)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확대

2) 경제자유구역 내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입주기
업 지원시설, 문화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산업입지정책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축소

나.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되어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
가 실시계획을 작성·승인하도록 축소

다.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인·허가 의제 개정조
문 위치를 변경

라.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지원 조항을 삭제
하여 제18조 등을 현행대로 유지

마.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범위를 비수
도권으로 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의6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 계획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8제1항제2호 중 “설치비용에의”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

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3조제2항 단서 중 “기간”을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의4제4호 중 “발굴에”를 “발굴 및 지원에”로 한다.

제2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변경·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⑤ (생략)

<신 설>

[illegible]

1. ~ 11. (현행과 같음)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도지사

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생략)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의 충당

② · ③ (생략)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1. (현행과 같음)

2.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의----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19의 2. (생략)

<신 설>

20. ~ 39. (생략)

② ~ ⑤ (생략)

제13조(토지수용) ① (생략)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_____.

1. ~ 19의 2. (현행과 같음)

19의3.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0. ~ 3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토지수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 9. (생략)

<신설>

---.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

-----발굴 및

지원에-----

5. ~ 9. (현행과 같음)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
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
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
정을 신청할 수 있다.

